##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5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송옥주·이해민·권칠승

이수진 · 김남희 · 박해철

이기헌 • 박희승 • 이병진

한정애・박 정・한민수

박홍배 • 이용우 • 안태준

정을호 • 전종덕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하여 보존하여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부터 제6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ㆍ점검)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③
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기록하여 보존하여야</u>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u>&lt;신 설&gt;</u>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
	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
	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
	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해야 한다.
<u>&lt;신 설&gt;</u>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
	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u>한다.</u>
<u> &lt;신 설&gt;</u>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신 설>

- 3. ~ 8. (생략)
- ⑤ (생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 3. ~ 18. (생략)
- ⑦ (생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
개하여여	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 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 8.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6	 	 	 	 	 	 	_
	 	 	 	 	 	 _	_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 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 18.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